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5.09.01 기준, 세전)

구 분	내 용			
상품특징	직장인을 위한 월복리 적금, 급여이체 실적 하나로 우대금리 Up!			
상품유형	적립식예금			
적립방법	분기당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단, 청년용원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단, 연금하나월복리적금,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계약기간	1년, 2년, 3년			
적용금리 (청년용원 특별금리 별도)	기간	1년	2년	3년
	금리	최저 연 2.75% ~ 최고 연 3.75%	최저 연 2.80% ~ 최고 연 3.80%	최저 연 2.85% ~ 최고 연 3.85%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우대금리 적용 ※ 신규 가입시 금리우대쿠폰을 사용·등록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			
재예치	○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 가능		
일부해지	○	계약기간 내 2회 가능 (중도해지금리 적용)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예금담보대출	○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예금자보호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99-1111,0,1)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약정금리를 월복리로 계산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		
중도해지금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1) x 경과율 ^(주2)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단위: 연, %)	
	(주1) 차등율 :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11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½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¼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시 불필요한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이용시 휴면계좌연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예시: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 상품특징 : 급여 하나로 우대금리 OK !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
보너스달에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는 분기 적립한도 및 긴급자금에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만큼 찾을 수 있는 직장인 전용 목돈마련 적금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중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5.09.01 기준, 세전)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 하나 월복리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이자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함
계약기간	1년, 2년, 3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청년유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적립한도	분기당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청년유원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기본금리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 별 기본금리 적용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기본금리	연 2.75%	연 2.80%	연 2.85%
우대금리 (최대 연 1.00%)	•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매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추가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항목	내용		
	급여하나 우대 (연 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 ^(주1) 보유한 경우(월 1회 이체)		
	온라인채널 가입 또는 재예치우대 (최대 연 0.10%)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스마트폰뱅킹/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단, 만기재예치 우대는 최초 계약기간 이후 재예치된 기간에 대해 적용) 예시) '25.3월 1년제 가입(재예치신청)계좌 : '26.3월 재예치 후 만기해지시 재예치 우대금리 적용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이 예금을 1년제로 가입하고,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추가 제공합니다.

우대항목	내용
청년우원 특별금리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① 급여 입금실적 ^(주1)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②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하나머니** 충전방식 제외) **하나머니: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

※ 고객별 1회에 한해 제공되는 특별금리로, 중도해지 및 재예치 기간은 미적용.

우대금리 (쿠폰)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2) x 경과율 ^(주3)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단위: 연,%)

(주2) 차등율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11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주3) 경과율 : 경과일 수 / 계약일 수 (단, 경과일 수는 계약일 수를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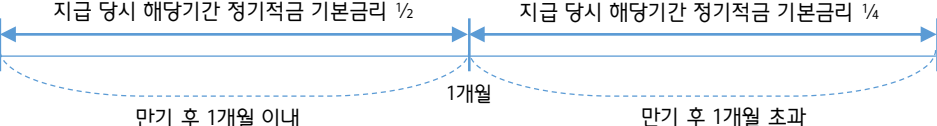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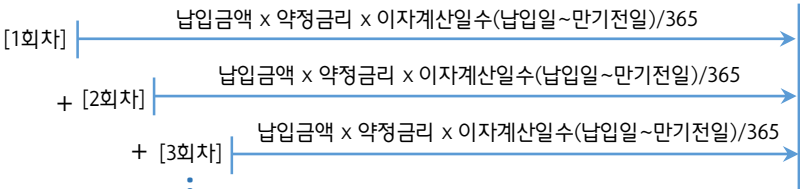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약정이율

기간	중도해지금리
계약일 ~ 1개월	연 0.10%
1개월 ~ 3개월	연 0.15%
3개월 ~ 6개월	연 0.20%
6개월 ~ 9개월	기본금리 x 60% x 경과일 수 / 계약일 수
9개월 ~ 11개월	기본금리 x 70% x 경과일 수 / 계약일 수
11개월 ~ 만기일	기본금리 x 90% x 경과일 수 / 계약일 수

중도해지금리

만기 후 금리	1개월 이내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	--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를 월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만기전일] 
--------	--

특별중도해지	-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때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지 사유 :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	---

만기 자동재예치 (총3회)	- 이 예금은 가입일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 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일부해지	예금 가입 후(또는 재예치후) 2회까지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 ※ 일부해지 후 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만기앞당김지급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만기 앞당김 지급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개인,개인사업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 가능 -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		
자동이체	적립한도 이내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비대면채널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및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지 가능합니다. ※ 비대면 채널에서의 해지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만기자동재예치를 등록 한 경우 해제 후 이용 가능) -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가능(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 하며,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장발행	통장 미발행 가능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0,1), 고객의 소리 (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

3

유의사항

- 이 예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중도해지금리(일부해지 포함)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자동재예치 등록계좌는 만기일에 계좌별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되므로, 재예치횟수 3회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 청년 특별금리는 가입자 기준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청년직장인 포함)

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설 명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